

유선방송의 현실태와 종합유선방송의 도입

宋喆燮
(정보통신사업본부 고도통신사업국장)

■ 차례 ■

- ① 서 론
- ② 유선방송의 현실태
 - 가. 유선 방송 제도
 - 나. 운영 현실태
- ③ 해외의 운영현황
 - 가. 유선방송의 보급형태
 - 나. 미 국
 - 다. 유럽국가
 - 마. 프랑스
- ④ 종합유선 방송의 도입
 - 가. 종합유선방송의 의미
 - 나. 종합유선방송도입의 필요성
 - 다. 종합유선방송과 시범사업
 - 라. 도입방향
 - 마. 유선방송의 영향
- ⑤ 결 어

① 서 론

세계 어느나라나 유선방송의 도입과정을 보면 방송전파가 도달하지 않거나 전계강도가 미약하여 제대로 방송을 시청할 수 없어 전계강도가 양호한 지역에 공시청안테나를 설치하고 안테나로부터 각가정까지는 케이블을 포설하여 양호한 TV화면을 즐길수 있도록 하는 난시청해소를 목적으로 유선방송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전파기술의 발달로 M/W, 광통신, 및 통신위성 등·전송기술의 고도화로 난시청지역은 대폭 축소되어 공중파방송을 수신 못하는 지역이 거의 없을뿐 아니라 품질면에서도 상당히 향상된것도 사실이므로 유선방송은 불필요하다 하겠으나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새로운 욕구가 확대되면서 유선방송은 뉴미디어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공중파방송은 안테나를 통해서 전파를 발사하므로써 전송출력에

따라 전파의 도달거리가 달라지며 그 지역내는 별다른 시설없이 수신기만 가지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고 시청범위가 광범위한 이점이 있으나 전파전파상의 공간잡음이나 산악, 도시건물 등 전파장애물 등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하면 유선방송은 방송국에서 가입자까지 유선망을 구성하여야하므로 전송기술 특성과 경제성 등으로 방송지역이 제한을 받게되며 유선방송을 요청한 특정인만이 시청이 가능하겠으나 공중파방송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하고 선명한 화질과 깨끗한 음질을 즐길수 있으며 지역매체로의 기능을 가지므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방송이면서도 방송주파수와 무관하게 다수의 채널을 설정하므로써 채널별 프로그램의 전문화로 가입자선택의 폭을 넓이므로써 가정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통신기술과 컴퓨터의 결합으로 양방향 유선방송시스템이 개발되어 가정에서 방송국은

물론 각종 생활정보(Data Base)에도 접속이 가능하여 정보통신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편리한 매체로 각광을 받고있다.

[2] 유선방송의 현실태

가. 유선방송제도

유선방송의 발전여부는 국가가 어느방향으로 끌고 가느냐에 달려 있고 그방향은 관계법에 잘 명시되어 있다고 하겠다.

1961.8.24 유선방송수신관리법이 제정되고 그해 9.21 시행령이 제정되어 약 28년간 이 법에 의해서 방송사업을 관리하여 왔으나 선시설하여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무허가사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므로써 우리나라 유선방송을 본체도에 올려 놓는데 실패하였다.

1986.12.31 기존 유선방송수신관리법을 폐지하고 유선방송관리법을 제정하여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으나 본질적으로 유선방송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지는 못하였다. 유선방송관리법이 허용하고 있는 방송내용을 살펴보면 공중파방송의 중계송신과 1일2시간이내의 녹화재송신만을 허용하고 자주방송은 공시사항만 허가를 득하여 정해진 시간내에서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제작 및 광고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유선방송수신관리법에 비하여 개선된것이 없으며 난시청지역이 거의 해소된 현상태하에서 중계방송만으로는 가입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으며 이를 이용한 유선방송사업자는 규정된 방송시간에 관계없이 저질의 비디오테이프를 자체송출 방송하므로써 유선방송에 대한 이미지를 떨어 뜨리는가 하면 영상문화를 악화시키고 있다. 유선방송사업의 허가제도는 문화공보부(현 공보처)장관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나 기술사항에 대하여는 체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유선방송시설의 준공검사는 체신부장관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2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각 부처는 하부기관에 권한을 위임하여 허가업무를 각 도지사와 체신청장이

시행하고 있으며 준공검사업무는 체신부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분담하고 있다.

허가절차에 있어 과거의 유선방송수신관리법은 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면 먼저 유선방송시설을 갖추고 허가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임시허가제도를 도입하여 임시허가를 득하여야만 시설할 수 있으므로 무허가사업자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허가업무의 2원화는 상호견제하여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는 이점이 있는 반면 사업자는 2개 부처와의 협의가 불가피하며 아울러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사업자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보처장관의 허가를 득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개인이나 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시, 군, 구단위로 1개사업자만 허용하고 있으나 무질서하게 허가됨으로 동일지역에도 다수의 유선방송사업자가 존재하여 현행법에 의하여 허가시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선방송에 제공되는 시설은 유선방송사업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전송로시설에 한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라고 관계법은 명시하고 있다. 현재 유선방송시스템은 기술의 발달로 양방향 유선방송이 개발되어 중요한 정보통신매체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의 단방향 전송로구성은 앞으로 양방향 유선방송 도입이 불가피하므로 대체시에 막대한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전송로시설공급을 유보하므로써 유선방송사업자가 Head-End 시설을 포함하여 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법은 과거의 수신관리법과 비교해서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일종의 금지법적 성격이 농후하여 제도적으로 우리나라 유선방송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나. 운영현실태

일반적으로 유선방송의 발전과정을 대략 4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TV방송서비스가 개시되고 초기보급단계인 60년대 이전까지는 유선방송이 난시청해소목적으로 공시청안테나를 설치하여 동축케이블에 의해서 각 시청자까지 구성하여 운영된 형태를 제1세대, Head-End시설을 갖추고 공중파방송을 수신하여 중계하고 자체방송프로그램을 송출하는 70년대를 제2세대, 80년대 들어와서는 유선방송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종래 유선방송은 일방향으로 송출만이 가능하였으나 가입자로부터 방송국으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양방향시스템이 개발되어 유선방송망에 정보통신을 수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고 위성통신망을 활용하므로 급격히 보급된 제3세대를 거쳐, 유선방송의 양방향특성과 광대역 특성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매체로의 활용이 극대화되어 완전양방향서비스로 발전되고 있으며 전송로는 광통신방식과 위성통신방식을 도입하는 90년대이후를 제4세대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유선방송의 발달과정을 비추어 볼 때 언론자유규제의 사회적 특수성, 제도적 장치의 미흡과 과감한 투자의 결여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는 아직 중계방송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선방송사업자수는 89년말 현재 750개의 사업자가 있으며 수용가입자는 134만세대로 평균사업자당 가입자수는 1,787세대로 운영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외 다수의 무허가사업자가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여 운영되고 있음은 유선방송을 관리, 감독측면에서 간과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유선방송사업자는 행정구역인 시,군,구 단위로 두도록 되어 있으나 허가된 사업자만도 상당히 초과된 상태이며 앞으로의 운영상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유선방송의 시설상태를 살펴보면 제도적으로 자주방송이 불가능하므로 프로그램제작시설이나 스튜디오설비등이 불필요하며 공중파 수신시설과 송출시설만 갖추고 있으며 전채사업자가 중계방송채널수가 동일하므로 시설수도 유사하다. 전송로시설에 있어 분배방식은 동축케이블을 사용하여 Tree & Branch방식으로 구성되고 전송주파

수대역은 기술기준에는 54~216MHz로 되어 있다.

동축케이블의 가입자까지 설치형태는 다양각색이다. 유선방송사업자가 설치할 수 있는 공법에 제시되지 않고 다만기술특성유지를 위한 기준만 있으나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동축케이블이 대부분 가공으로 가설되나 89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통신전주의 첨가를 불허(89년이후는 유선방송케이블을 전주에 첨가허용하고 사용료부고)하므로 한전주의 첨가, 건물벽면에 부착이나 별도의 간이지지대를 설치하여 무질서하게 포설하므로써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국내에는 유선방송시스템을 생산하는 업체가 일부있으나, 생산제품의 대부분은 해외로 수출되고 국내수요는 거의없는 실정이며 유선방송사업자가 시설한 송출설비나 전송로시설은 공인기관의 규격품이 아닌 비규격품을 사용하므로써 유선방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유선방송사업자가 송출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유형별로 공중파방송의 중계 및 재방송하는 사업자, 중계 및 재방송과 Video Tape을 송출하는 사업자와 Video Tape만을 송출하는 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다.

유선방송사업자가 송출하는 Video Tape내용은 무분별하게 방영하므로써 영상문화를 해치고 아울러 유선방송의 Image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밖에 지역에 따라 그 지역의 공지사항을 방송하므로써 지역매체로 기능을 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광고방송을 하고 있는 사업자도 있으나 법으로 금지된것은 전술한바와 같다.

[3] 해외의 운영현황

가. 유선방송의 보급형태

유선방송의 도입과 보급형태는 나라마다 일정하지 않으며 지리적인 상황이나 문화적 사회구조 및 제도에 따라 상이하게 발전되어 왔다. 광활한 국토를 배경으로한 북미대륙형 유선방송과 좁은

면적에 다수의 국가가 인접되어 있는 유럽국가형 유선방송발전에 각각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북미대륙형은 기술적으로 광범위하게 산재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우수한 영상품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전송기술에 역점을 두어 개발하므로써 동축케이블, 위성통신의 이용과 광케이블방식을 개발도입하게 되어 상업적 필요성에 의하여 민간 위주의 사업운영 체제를 바탕으로 개방적인 제도를 채택하므로써 유선방송이 가장 발달하였으나 타매체와의 연계보다는 독자적으로 발전하였다.

유럽국가형 유선방송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영방송테두리 안에서 국가적인 통제와 규제하에 공중파방송의 보조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업적 성격이 배제되므로써 대륙형에 비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보급율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나. 미국

미국의 유선방송산업계를 구성하는 집단은 시설운영자, 프로그램공급자 및 사업규제자 셋으로 분류되며 가장 발달되어 있다. 시설운영자(System Operator)는 유선방송시스템을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는 사업자이며 단독시스템으로 비교적 소규모적으로 운영하는 SSO(Single System Operator)와 복수의 시스템을 보유하고 대규모적인 Network를 구성하여 전국적 규모의 사업을 하는 MSO(Multiple System Operator)로 구분할 수 있으며 미국에는 '89년말 현재 9,010개의 사업자가 있다. 전세계적으로 프로그램산업이 가장 발달한 국가이며 프로그램공급자는 전미국내의 프로그램을 제작, 공급하는 회사와 기존TV방송국, 광고회사, 분배매체를 제공하는 통신위성기구 그리고 각종 정보제공업자 및 방법. 방재 용역회사 등이 포함되며 광고가 포함된 프로그램을 시설운영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기본프로그램공급자와 유료로 공급하는 유료프로그램공급자로 구분된다. 유선방송사업의 규제기관으로는 연방통신위원회(FCC), 주위원회 및 지방자치제 등이 있으며 사업의 인가권은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체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규제와 감독은 연방정부 또는 FCC에서 자유경쟁과 공공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하고 있으며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프랜차이즈 기준
- 재송신 의무
- 교차소유권(Cross-Ownership)
- 기술기준의 준수
- 운영상태기록 및 보고의무
- 운영자 자격제한
- 프로그램내용규제(외설금지등)

미국의 시설운영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10,000가입자 이하의 운영자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으나 MSO계획에 의하여 몇10만 내지 몇백만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Head-End와 Sub-Head-End간은 광케이블매체를 사용하여 증폭기수를 대폭 줄임으로서 광케이블의 전송구간을 시청자의 대내시설 가까이까지 최대로 연장한 새로운 유선방송 Network 구성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광활한 지역을 동축케이블방식에 의한 서비스품질유지의 한계성, 아울러 광케이블은 High Bandwidth 와 Low Loss Transmission Media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미국의 프로그램공급사업자의 특징은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전문화로 시청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HBO(Home Box Office)와 CNN(Cable News network)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그램 제작자이며 공급자이다.

프로그램산업의 발달과 함께 전국적인 배분은 방송위성Network를 이용하여 본토뿐만 아니라 알라스카와 하와이까지 동시에 전송이 가능케하였으며 미국에서 프로그램산업이 발전한 중요한 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영화의 수출대국으로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이 활발하다.
- 프로그램의 제작, 배급 및 진흥 등이 전문적으로 분리
- 회선사용료가 저렴한 통신위성의 이용활발 끝으로 유선방송시스템은 재송신채널, 자주방송채널, Pay-Per-View채널 및 양방향채널을

갖도록 FCC는 권고하고 있으며 여기서 양방향 채널은 가입자택내에서 정보를 Head-End나 기타 다른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상향채널이며 시청자여론 조사, 원격감시, Home-Shopping에 이용된다. 공급되는 프로그램은 영화, 스포츠, 예술, 교육, 음악, 뉴스 기타 각종정보와 오락물을 제공한다.

다. 유럽국가

유럽지역의 유선방송은 TV난시청해소 목적과 인접국가의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으며 위성을 이용하여 유선방송사업자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활성화로 유선방송이 급격히 발전하였으나 문화, 언어, 지리적여건에 따라 나라별로 보급율은 크게 달라 네델란드, 벨기에, 스위스 등은 70%이상인 반면 서독, 영국, 프랑스 등은 30%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서비스현황은 주프로그램 공급원은 국영TV 방송의 재송신, 인접국가 방송의 수신·재송신, 위성방송의 수신·재송신 등이며 자체프로그램방송은 매우 미미하여 북미지역과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발전추세인 양방향 부가서비스는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 단계에 있다. 유럽국가의 유선방송에 대한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관주도의 엄격한 통제위주에서 점차 민간에게 개방추세이며 유선방송망을 향후 B-ISDN망으로의 발전을 위해 광케이블 개발에 의한 유선방송망의 전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마. 프랑스

프랑스의 유선방송은 TV난시청해소 대책용으로 TDF가 일원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1982년 정부는 광케이블에 의한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을 통해 정보통신분야의 세계선두주자를 차지하기 위해 「Plan Cable」이라는 야심적인 광대역 영상통신 망건설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관주도의 한계성, 시설기관과 운영회사간의 타협 지연 및 정부정책의 변화 등으로 1986년 재검토하여 광케이블과 동축의 혼합방식의 채택과 민간에게도 유선방송참여를 허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을 펴 나갔으나 보급율은 극히 저조한 편이다. 유선방송시스템의 설치운영주체는 지방자치체이며 설치에 관해서는 지방자치체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운영은 통신자유위원회(CNCL)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광대역 영상통신망의 설치운영의 인가는 제외되고 DGT(Frane Telecom)가 종래와 같이 감독한다.

프랑스의 유선방송 가입자수는 '89년말 약 14만으로 공영방송의 재송신과 심한 규제등에 기인하겠으나 전통적으로 그림문화에 강한 국민성과 TV나 유선TV에 대한 관심저조, 가정중심의 생활보다는 사회중심의 생활방식 및 불어사용 국가가 적은것 등이 중요한 이유로 들 수 있다.

바. 서독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재송신목적으로 유선방송이 도입되었으나 공영방송의 독점체제 견지로 자주방송은 규제로 발전이 지연되었다. 그러나 1978년 뉴미디어에의 적극적인 대처로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고용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4개 지역(서베르린, 류드쉬하겐, 뮌헨, 도르트문트)에 실험적 운영을 실시하여 도시형 유선방송을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83년 우전성은 광대역케이블 건설계획(BIGFON PLAN)을 수립하였으며 여기에 유선방송망의 건설도 포함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케이블의 설치와 소유는 우전성이 케이블방송사업 허가는 주정부권한으로 되어 있으며 정부에서 유선방송과 전화 및 컴퓨터망을 통합하려는 정책방향을 펴 나아가고 있다.

사. 일본

1957년 난시청해소 목적으로 도입하였으나 방송망의 정비로 난시청이 해소되고 각 지방의 민간방송국이 설치되어 지역간 방송수신 채널수를 줄이기 위해 유선방송이 발전하여 왔으나 1964년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도시형 유선방송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유선방송의 보급형태는 유선방송사업자수가 많은 반면 사업자당 가입자수가 적은 소규모의 운영형태이다. 1988년말

45,200개의 사업자수에 가입자수는 580만세대이며 평균 가입자수는 130세대로서 미국의 5,000세대와는 대조적이다.

유선방송사업에 대한 허가권은 우정성이 가지고 있으나 500세대 이상만 허가대상이며 500세대 이하의 신고로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유선방송사업자는 민간사업자와 공익의 공공단체가 될 수 있으며 방송시설 및 케이블은 단일사업자나 단체가 설치할 수 있다. 유선방송의 양방향 전송특성과 광대역성 및 다양한 서비스제공 등 뉴미디어의 중심매체로서 기능을 가지므로 Hi-Ovis의 실험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영상정보서비스 도입을 도모하였으며 오늘날에는 대기업들이 유선방송의 관련산업에 파급효과가 크게 인식되어 유선방송사업에 대기 참여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4 종합유선방송의 도입

가. 종합유선방송의 의미

유선방송은 공중과 무선방송과 달리 유선망을 통해서 특정인에게만 방송되는 것을 말하며 종합유선방송은 중계재방송과 자주방송을 포함하는 의미와 TV, Radio방송과 각종 통신서비스를 포함하는 의미 등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전자를 협의의 종합유선방송, 후자를 광의의 종합유선방송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기술의 고도화와 서비스의 다양화 경향에 비추어 볼때 후자가 더 적절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유선방송을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및 자가유선방송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업허가는 한가지 종류만을 허용하고 있다.

나. 종합유선방송도입의 필요성

국민생활의 향상과 더불어 국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획일적인것 보다는 개별선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방송매체가 갖는 한계성의 극복과 전자산업기술의 발전으로 컴퓨터와 통신과의 응용결합도가 높아지고 양방향 정보교환의 가능성으로 200년대 정보사회의 중심

매체로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 방송과 더불어 정보통신의 기반을 구축해야하며 종합유선방송시스템은 방송기기, 전송장치, 무선시설, 광 또는 동축케이블 및 컴퓨터 등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기기의 설치와 운영기술분야, 영상 및 정보통신 서비스분야, 프로그램분야 등 종합유선방송이 갖는 산업적·기술적 파급효과가 지대하며 동시에 관련산업의 활성화와 고용증대 등 전후방 효과가 대단히 클것으로 예상된다.

시기적으로 종합유선방송의 정착까지는 약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정보화사회 발전에 맞추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의 유선방송체제가 더이상 확대되기전에 유선방송의 방향을 정립하여 도입추진함으로써 기존시설을 종합유선방송으로 대체에 따른 막대한 국가적 손실과 무질서와 혼란을 방지하게 될 것이다. 종합유선방송은 양방향성으로 방송중계와 통신서비스 등 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서비스당 전송로 비용의 절감으로 가입자부담의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산업의 낙후에서 조속히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통신개방 압력과 더불어 무차별적인 개방압력에 대응기반을 구축하고 외국의 DBS문화 침투에 대비하여 건전한 종합유선방송의 도입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 종합유선방송과 시범사업

유선방송사업을 허가 및 관리하기 위해 유선방송수신관리법과 유선방송관리법이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 기술을 따르지 못할 뿐아니라 운영상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유선방송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향에서 종합유선방송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이와같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있어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이 기회를 실행한다면 유선방송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시범방송을 통해서 운영·기술 등 제도상의 시행착오를 방지해야 할 것이며 시범방송의 의의를 정리

해 보면 다음과 같다.

○뉴미디어 도입을 위해 기술의 타당성, 경제성 등의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자료확보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식 및 수요창출 계기 부여

○유선방송망을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가능성확인

○영상문화 진흥기반 조성의 가능성확인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에 반영

○종합유선방송이 국민생활에의 기여도측정

유선방송은 전자기술의 발달로 양방향 기능이 부가되고 유선방송망을 이용하여 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됨으로 뉴미디어의 중심매체로의 각광을 받게 되어 각국은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프랑스의 비아릿츠지역, 서독의 서베르린등 4개지역과 일본의 학원도시에서 시범을 실시하여 광방식 유선방송시험, 양방향시험 및 정보통신서비스시험을 실시하여 새로운 서비스 도입의 기반을 구축고 있다. 정부는 1991년 상반기부터 서울의 목동과 상계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시범을 계획하고 종합유선방송추진위원회에서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1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유선TV의 시범방송을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대행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중계재방송만을 허용하였으나 중계방송, 자주방송, FM Radio방송 및 방법방재 등 정보통신서비스도 포함한 시범을 하므로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하겠다. 시범방송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전에 시행하게 됨으로 민간방송사업자의 경우와는 다른 각도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사업자의 경우는 주체가 민간인이고 지역적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정부가 시행하는 시범운영은 정부가 주체가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파급효과가 전국적이며 아울러 우리나라 종합유선방송 도입과 직결됨으로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프로그램편성은 정부의 방침하에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관주도형의 경색된 편성이나 기존 공중파방

송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프로그램의 방영을 탈피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지역미디어로서 지역커뮤니티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라. 도입방향

중계재방송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선방송은 획기적인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만 선진국을 따라 갈 수 있으며 유선방송기술이 발달된 현 시점에 진입하므로서 후발대로의 이점도 기대할 수 있다. 유선방송이 자주방송이나 Pay-TV와 정보통신서비스의 확대등으로 세계 각국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을 뿐아니라 우리나라 국내시장 규모도 2011년 까지는 2조원을 넘을 것이 예상되어 관련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이다. 따라서 종합유선방송의 도입은 운영기술과 문화적 기반을 다져 갈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우선 제도적 장치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유선방송이 앞으로 도래하게 될 정보사회에서 뉴미디어로의 역할

○유선방송과 기존 공중파방송 및 타뉴미디어와의 관계

○유선방송의 통신과 방송의 영역한계

○유선방송의 문화와 사회적기능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체제

□ 사업자구분

유선방송사업은 방송국운영자와 전송망공급자 및 프로그램공급자로 크게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며 제도에 따라서 방송국운영자와 전송망공급자를 분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각각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방송국운영자는 유선방송의 특성을 살려 지역단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지역내에서는 다수사업자의 난립을 방지하도록 독점권의 부여와 아울러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는 750개 이상의 단방향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새로운 제도에 의해서도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종합유선방송의 도입과 보급방향을 미리 제시하고 새로운 제도로 전환이 가능토록 시설투자비나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으로 지역매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유선방송이 지역매체로의 기능을 하여야 하며 따라서 방송국운영자는 지역단위로 국한하고 여러지역을 점유하거나 전국단위의 운영은 배제되어야 한다.

유선방송이 영상문화로 정착하느냐의 여부는 프로그램의 질과 양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하겠으며 우리나라는 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질의 문제도 있겠으나 우선 양적에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유선방송사업자가 있으나 제도적으로 자주방송이 허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프로그램을 공급할 시장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공급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공급할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다. 종합유선방송의 도입으로 자주방송이 허용되면 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프로그램제작자와 프로그램공급자가 다수 출현이 예상되나 제작설비등의 투자비가 막대하게 소요됨으로 당분간은 종합유선방송도입과 병행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Head-End로 부터 가입자까지의 전송망을 건설하여 방송국운영자에게 제공하는 전송망사업자는 방송국운영자와 별도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송망건설에는 막대한 건설비와 유지비가 소요되어 방송국운영자는 적은 자본으로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양방향기술의 발전으로 유선방송매체의 광대역성 때문에 전송망은 정보통신의 전송매체로도 활용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통신 Network 위주가 될 것이다. 종합 정보통신 Network와 별개로 구성시 국가적으로 이중투자를 하게 됨으로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송망공급자는 통신 Network 를 보유하고 기초시설을 갖춘 기간통신사업자가 시설하여 공급토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운영체제

유선방송을 도입·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유선방송에 대한 정책이나 관리감독 등이 단일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원화되어 업무의 복잡과 사업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단일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송국운영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규제가 대폭 완화하여 규제대상을 제외한 내용은 자유로히 운영 및 방영을 허용하되 규제사항은 건전한 영상문화 정착을 위해서 철저한 지도와 단속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표준화

종합유선방송의 본격도입 보급에 적용될 주요 장비에 대하여는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품질을 유지하고 적절한 내용년수를 유지시켜 운영비용을 절감시키도록 하여야 하며 유선방송의 특징인 선명한 화면과 우수한 음질을 제공토록 하여야 한다.

방송장비의 핵심부분은 외국제품이 대부분이며 전송장비에 있어서도 국내업체에서 부분적으로 유선방송시설을 생산하여 해외에 수출하고 있으나 산업기반이 취약함으로 조속한 국산화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따라서 종합유선방송도입에 대비하여 장비의 표준화가 조속히 결정되어 사업자나 제조업체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표준화는 전자분야의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점을 감안해서 국내 관련산업체가 탄력적으로 개발적용할 수 있는 성능형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보통신서비스적용

2000년대의 사회는 정보화사회를 전망하고 있다. 그 만큼 사회구조의 복잡과 더불어 정보의 대량생산 유통처리가 불가피하며 체계적인 정보통신망의 출현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고 사회 각 분야는 이에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유선방송의 양방향성과 광대역성은 정보통신매체로서 중심이 되고 종합정보통신서비스망(ISDN)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전송구간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전화, 영상전화, FAX, PC통신 등의 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는 유선방송망을 이용하여도 가능할 것이다. 가입자까지 광케이블망이 구성되고 신호전송이 Digital화 됨으로 서비스의 고속화, 고품질화로 전환되어 우리 생활환경을 크게 바꿀 것이다. 홈쇼핑, 홈뱅킹, 재택근무, 재택진료는 물론 원격감시와 검침등이 가능하여 국민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유선방송의 영향

종합유선방송의 도입은 국민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관련산업의 방대한 파급효과, 정보화사회에의 기여 등 많은 이점을 갖고 있으나 예입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작은것일지라도 간과해서는 안되고 중요한 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으며 제도의 도입과 운영면에서 신중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문화적측면

-국내 프로그램제작 기반이 취약으로 외국 프로그램의 무분별한 도입경우 문화종속과 저질 퇴폐화

- 상업화에 치우쳐 저질퇴폐 프로그램의 범람
- 재정난 타개를 위한 무질서한 광고방송
- 각종 프로그램도용에 따른 저작권 시비발생

□기술적측면

-유선방송에 대한 국내 산업기반의 취약으로 초기 기술이 외국기술에 의존할 경우 기술적종속

- 단말기의 기능 확장성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서비스도입에 장애요인발생
- 통신망과의 중복투자

□ 산업경제적측면

-초기단계 기업간의 과당한 경쟁으로 기술도입의 불리한 계약

-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지 않고 수입에만 의존하여 산업발전저해
- 외국 프로그램도입에 따른 외화낭비

및 시설의 열악과 제도상의 미비 등으로 유선방송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면서도 종합유선방송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기적으로 보아 유선방송 보급율이 15~20%인 현 시점에서 정책이 결정되면 용이하게 새로운 유선방송제도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앞으로 1~2년이 도입의 적기라고 판단되며 종합유선방송을 확실하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선하려는 의지, 사업자의 건전한 영상문화를 조기 정착시키려는 의지와 가입자의 적극적인 협조자세 3위일체가 되어야 가능하며 또한 종합유선방송의 기반구축과 아울러 종합정보통신서비스 수용과 방송위성에 의한 DBS와 HDTV도입에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선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정부의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직·간접의 적극적인 지원육성책이 강구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고 국민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이 공급되므로 앞으로 시행하게 될 지자체의 중심역할을 하게 될때 유선방송의 활성화와 아울러 관련산업의 진흥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5] 결 어

유선방송내용의 불건전성, 사업규모의 영세성



宋 喆 婁

저자약력

- 1962년 : 國際電信電話局
- 1968년 : 서울 遞信廳 工務課
- 1972년 : 長距離電信電話 管理廳
- 1978년 : 遞信部 施設局
- 1982년 : 韓國電氣通信公社 技術開發室
- 1985년 : 錦山衛星通信地球局長
- 1990년~(現) : 情報通信事業本部 高度通信事業局長